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이 표에서 “자치단체”라 한다)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

$$\begin{aligned}
 & \text{교부 총액} \times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력역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times 50\% + \\
 & \left(\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사회복지비지수}} \times 10.4\% \right.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령인구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times 3.2\%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노인보호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times 1.6\%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times 2.4\% \\
 & \left.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장애인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장애인지수}} \times 2.4\% \right) + \\
 & \left(\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저출생투자비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저출생투자비지수}} \times 5\% \right.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영유아수 비율}}{\sum \text{자치단체별 영유아수 비율}} \times 10\%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 \times 9\% \\
 & \left.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 \times 1\% \right) + \\
 & + \frac{\text{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sum \text{자치단체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times 5\%
 \end{aligned}$$

비고

1. “평균 재정력역지수”는 전전년도, 전년도 및 해당 연도 3년간의 평균을 말한다. 이 경우 3년간 평균 재정력역지수가 영 이하이면 영으로 한다.
2. “사회복지비지수”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고, “노령 인구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지수”, “장애인지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대한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의 비율을 말하며, “노인보호지수”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정원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별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인구수”, “노령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는 영 별표 2에 따른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3. “저출생투자비지수”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저출생투자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고, “영유아수 비율”은 해당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대한 영유아 수의 비율을 말하며, “공공보육 이용률 역지수”는 “1/해당 자치단체별 총 보육대상수(영유아 수)에 대한 공공보육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하고,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는 전국의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정원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 저출생투자비예산은 임신·출산, 양육 및 일·가정양립 등 저출생 대응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공공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 지역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로 한다.

4. “재산세 부과액지수”는 재산세 부과액(결산액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후 부과액)을 말한다.